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0,101,970	13,503,059
일반회계	418,962,348	12,568,870
특별회계	31,139,622	934,189
기타특별회계	31,139,622	934,1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029,105	270,873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637,350	19,121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700,000	21,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8,855	4,166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990,785	149,72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4,337,600	130,128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71,000	38,13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0,034,927	301,04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89,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